

## 【 6 】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0. 2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당초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거 시행해 왔으나 동법시행령('99.3.12 개정 대통령령 제16179호) 제59조 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는 동시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함  
(안 제2조 제2항)
- 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안 제4조 제2항)
- 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안 제4조 제3항)
- 라. 법 제3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5조 제1항)
- 마.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함(안 제6조)

##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3조의 2 및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의견진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법 제3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3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양 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제2조 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련법조항	부 과 기 준	한도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1호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
2. 법 제21조의 18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 (단,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 가. 1월초과 1년6월이내 나. 1년6월초과 2년이내 다. 2년초과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토지가격의 4/100 토지가격의 8/100 토지가격의 10/100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법 제21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이용 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토지가격의 10/100	200만원
4. 법 제21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매도한 경우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토지가격의 10/100	200만원

[별지 제1호 서식]

## 의 견 진 술 통 지 서(제3조 관련)

## 양 주 군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 년 월 일)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과태료 원인사실				
	법적 근거				
의 견 진 술	부서명		담당자		
	주 소				
	기 한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까지	
기 타					

##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양주군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군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진술서 1부.

양 주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진 술 서(제3조 관련)

19

1. 관련 출두요청서 : 제 호

2.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 유무 :

3. 소명요지(의견이 있을때) :

4. 기타

년 월 일

주 소(대표자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성명(업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시행년월일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p>귀하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양주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군 관내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통지 제 호			
과태료 처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장소	상호(명칭)		업 종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내용	
	산출근거		
과태료 금액			
<p>※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양 주 군 수			

[별제 제4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서)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우리군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자도장		

과 태 료 납 부 서 (시·군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자도장  양주군수 기록		

과 태 료 납 부 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별자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 호 :

주 소 :

성 명 : 귀하

과태료 납부 통지 번호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자녀는 차분	①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 번호	
	⑥ 고지서 받은 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 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1.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5항과 관련입니다.</p> <p>2.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태료처분 및 불복내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관청	⑦이의제기일자	
	⑧과태료 처분사유		
	⑨본인의 불복사유		
<p>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p>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간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②이 法에 의한 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을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31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82 · 12 · 31)

## 第 6 章 罰 則

第31條의2 (罰則) ①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契約締結 당시의 당해 土地가격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算定을 위한 土地價格은 個別公示地價를 기준으로 算定한 價格으로 한다. <改正 95 · 12 · 29 法5108>

(全文改正 93 · 8 · 5)

第32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2 · 12 · 31, 93 · 8 · 5>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行爲를 한 者. 다만, 關係法侖에 의하여 許可 · 認可 또는 承認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削除 <99 · 2 · 3>

2. 第24條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用途變更을 한 者

3. 第27條第 2 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를 한 者

4. 削除 <99 · 4 · 1>

(全文改正 78 · 12 · 5)

第33條 削除 <93 · 8 · 5>

第33條의2 (過怠料) ①削除 <99 · 2 · 3>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4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 測量行爲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者

2. 第4條第 2 項 내지 第4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 또는 통지없이 第4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3. 第4條第 5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4. 및 5. 剷除 (99·2·8)

6. 第21條의 1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아 취득한 土地  
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者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同項第1號 내지  
第3號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同項第6  
號의 경우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각각 이를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  
議를 제기한 때에는 그 處分權者는 자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滙納處分 또는 地方稅滙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하  
다.

(全文改正 93·8·5)

第34條 (罰則의 適用關係) 用途地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令이 適用되는 경우에는 이 法 第3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律의 罰則規定에 의한다.

(全文改正 82·12·31)

第35條 (兩罰規定) 法人的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的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  
員이 第31條의 2 또는 第3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78·12·5, 93·  
8·5)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7條·第8條·第10條 및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당  
시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都市開發豫定區域을 포함한다)은 都市  
地域으로, 公園法의 規定에 의한 國立公園 및 道立公園은 自然環境保全地區로, 觀  
光事業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國立公園 및 道立公園은 제외된다)는 觀光休  
養地區로 각각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用途地域 또는 用途地區의 指定당시 그 地域 또는 地區안에 있는 既存  
의 施設·建築物·工作物과 違法하게 施行중인 施設·建築物·工作物의

6.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7. 동일한 시·군·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일부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후 결정·변경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있어서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8, 94·12·23, 95·10·19, 97·9·11>

③도지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1·7·4, 93·12·28, 97·9·11, 99·3·12>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9·5·24)

제59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12·23, 97·9·11, 99·3·12>

(본조신설 93·12·28)

##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

###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당초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거, 시행해 왔으나 동법시행령('99.3.12개정 대통령령 제16179호) 제59조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는 동시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함(안 제2조제2항)
- 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안 제4조제2항)
- 다. 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 라. 법 제33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 마.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안)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함(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1999. 10. 11 ~ 1999. 10. 30(20일간)사전예고 한바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기존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